5·18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5 · 18과 여성 성폭력

일시 : 2018. 9. 28. 14:00~16:00

장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

주최 : 민주평화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평화연구원,

전남대 5·18연구소,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어머니회, 여성신문

주관 :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5·18과 여성 성폭력

<발표>
5·18과 성폭력, 그리고 진상규명1
김영필 교수(국회고성연수원)
<u> </u>
5·18과 여성 성폭력15
김희송 교수(전남대 5·18연구소)
5·18민주화운동 · 성폭력 · 진상조사23
안종철 박사(한국현대사회연구소)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 사례와 사회적 배경29
임태경 이사(민족문제연구소)
5·18 성폭력 생존자 증언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33
김선미 박사(여성학자)
고문 및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가혹행위 조사와 2차 피해 방지37
장세레나 상임대표(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5·18 성폭력은 국가폭력이다. 5·18진상규명 어떻게 해야 하나?43
5.10 성국익는 국가국익이다. 5.10선성규정 이렇게 예약 이다!43 이윤정 회장(오월민주여성회)
기번 O 서 O(ㅗㄹᇿㅜㄱ O러/

발제

5·18과 성폭력, 그리고 진상규명

김영필 교수(국회고성연수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둘러싼 현 상황

- o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년 9월 14일 시행)에 의거하 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 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
- 9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1명, 상임위 원 1명)
- 국회의장,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안종철 소장 추천
- 민주평화당(더불어민주당 몫 1명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 추천
- 바른미래당,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오승용 교수 추천
- 더불어민주당(4명 혹은 3명)과 자유한국당(2명 혹은 3명)이 현재 조사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
- o 정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

- 결(9월 4일), 국방부 시행령 공포(9월 11일) 시행령 시행(9월 14일)
-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 정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으로 발족
- 위원회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두고, 행정안 전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하며,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다른 국가나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수집을 지원해야하는 내용 등이 담김
- 진상규명 관련한 업무분장은 조사1과(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조사2과(법 제3조 제3호, 제4호, 제5호), 조사3과(법 제3조 제6호, 제7호)
-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음(시행령 제9조)
-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발족이 늦어질 경우, [4.16세월호참 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이 활동기간 등의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음
- 5.18민주화유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를 둘러싼 개정안
-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 o 제1호 :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 작의혹사건
- ※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2. 손금주 의원 개정안(2018년 5월 10일 제안)

- o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9월 시행 예정인「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은 조사범위에서 빠져 있어,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이는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임
- ※ 성폭력은 조사범위에서 빠져 있다고 단언함으로써 역으로 법률의 개정이 없는
 는 한,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될 수 있음
- o 제3조 제1호 중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을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 등"으로 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너무 광범위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제11731호(형법), 2016.12.20]
- 「형법」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2. 「형법」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리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3.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 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4. 「형법」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 범죄로 본다.

3. 최경환 의원 개정안(2018년 5월 11일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압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이 심한 후유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음. 이에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하여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제기됨.

- o 이에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u>진상규명의</u>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호)
- ※ 증언과 제보에 따르는 진상규명 범위의 구체화를 도모함. 사망·상해·실종·암 매장 사건과 성폭력 사건이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게 됨
- 4. 최경환 의원 개정안(2018년 6월 4일 제안)
- o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법률에서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50명 이 내로 규정하여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뿐 아니라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가 작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o 이에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항, 제30조,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설, 제2항 제3호 삭제)
- 5. 김상희 의원 개정안(2018년 7월 12일 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성폭력이 명시되 어 있지 않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조직이 없 는 상황인데, 성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의 사생활 및 인적 사항 등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

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 사건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호, 제7조 제5항 제6항 신설)

o 개정안

- 제3조 제1호 중 "암매장"을 "암매장·성폭력"으로 한다.
- 제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 제3조 제1호에 성폭력 사건을 구체화하고, 제7조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함으로써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얻어낼 수 있음
- 6. 박광온 의원 개정안(2018년 8월 21일 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지만 여전히 일부 세력들은 비방, 사실 왜곡·날조 등의 폄훼 행위를 자행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날조하거나「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관련자 및 유족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국가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제5조 2항 추가 및 제8조 신설).

<u>※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의 진상규명의 범위와 관련된</u> 내용이 아님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관

- o 정부여당 요인
-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소관 부처가 국방부인 점 : 득일까? 독일까?
- 문재인 정부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진상규명의 적극적 의지 : 문 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지지도와 연동
- 광주전남지역 여당의원 극소수 :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역할 중요
-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가능성 :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야당과의 협 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 있음
- o 정치논리의 작용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들이 추천한 위원의 저항
-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상황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진상규명에 소극 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 위원회 활동의 결과가 21대 총선에 미칠 영향 : 광주, 전남지역의 총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21대 총선의 결과와 위원회 활동의 종료 및 시기 연장의 가능성
- *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협조태세가 관건. 특히 바른미래당 박주 선, 김동철, 권은희 의원 등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에 자당 추천 위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그러한 역할이 가능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중요함. 그럴 경우 진상규명조사위원회 9명의 위원 중 최소 6명의 위원을 친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 확보 가능함으로써 진상규명조사위 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됨

- o 성폭력 피해여성 문제가 경시될 가능성
- 진상규명 활동이 총론적, 거시적인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성폭력 피해여성 문제가 경시될 가능성이 있음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에서는 구체적 진실규명의 예시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들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여성문제는 인권유린이나 폭력의 하나의 예로서 학살이나 암매장 등 다른 이슈에 비해 경시될 가능성이 있음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성과의 활용

-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단 발족(6월 8일)
-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6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
- 여성가족부 : 피해신고 접수 총괄,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의료 지원 등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 군 내·외 진상조사 총괄
- 국방부 :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 적극 지원
- 피해신고 :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전화, 우편, 방문접수 및 여성가족부·국가인권 위원회·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조사결과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 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 포인트

- o 국방부(구 보안사 포함) 등의 자료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 법 제27조 ⑦항 악용 소지
- 법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⑦ :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 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방부, 보안사 등 군 내부 자료의 확보는 위원회 활동의 성패를 좌우

- o 가해자 사면 복권 등 조항 적극 활용
- 법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①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 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 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 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 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 가해자 증언의 확보를 위해서도 위 조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o 신청자 등의 보호 조항 철저히 지켜져야 함
- 제4장 제2절의 조항들을 위원회가 책임감 있게 지켜야 함

※ 5.18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2차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됨

- 5.18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점정리
- o 5.18에 대한 전두환 신군부의 시각
- 전쟁 : 당시 계엄군 책임자들의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진술되는 부분은 정당 방위론, 폭도들(북한군)을 제압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 작전수행 : 초토화 전략(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묵인 혹은 장려)
- 전시성폭력의 성립 : 국가책임의 성립
- o 범죄의 성격과 책임 소재
- 전시 성폭력 : 국가 책임
- 단순 성폭력 : 개인 책임
- 성고문 : 국가책임,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 o 피해유형 및 가해자
- 성폭력(강간) : 계엄군
- 성고문(?)의 가능성 : 보안사, 경찰
- 여성성에 대한 신체 훼손 : 계엄군
- ※ 오월의 노래 중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은 故 손옥례씨의 사연을 담은 것이다. 손옥례 씨는 1980년 5월 22일, 계엄군의 총에 의해 가슴과 엉덩이에 관통상을 입은 다음, 대검에 의해 젖가슴이 찢겨서 사망했 다.(나무위키 오월의 노래 항목 참조)

- o 피해자에 대한 구제, 보상 및 배상
-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에 의한 사과
- 범죄피해 사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배상
- 피해사실의 기록과 기억(역사관 등)
- o 소멸시효
- 인도에 관한 죄
- 신고기간 없고 소멸시효 없음
-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 o 피해상황의 기억과 증거
- 피해자 증언
- 가해자 증언
- 목격자 증언
- 피해기록 확인(경찰조서, 군 내부문서, 보안사 일일상황보고 등)

o 5.18 성폭력 피해여성과 일본군 위안부 비교

	5.18 성폭력 피해여성	일본군 위안부
_1 -1 -1	1980년 5월	1930년대~1945년
피해기간	후유증 지속	후유증 지속
	한국여성	한국여성
피해자	대부분 생존(50-60대 추정)	대부분 사망
	일부 사망	일부생존(80-90대 고령)
가해자	한국군인(계엄군, 보안사), 경찰	일본군인
	성고문(시위자, 연행자)	성노예(위안부)
피해형태	강간(일반여성)	장기적, 지속적 피해
मणाउपा	신체 훼손(시위자 등)	
	단발성 피해	
-1 -11 T 01	일부 실명 증언	피해 후 46년만인 1991년 김학
피해증언	향후 피해자 증언 가능성 있음	순 할머니 증언

가해증언	어 <u>으</u> 봐. -	일본군 증언 있음
사회적	극히 미미	여성단체 등 대대적 관심
관심	정치권, 5.18관련단체 관심필요	소녀상, 기림비 등 상징물
구체적	정황증거	피해자 및 가해자 증언
증거	군 내부문서에서 확인가능	일본의 공문서 등

- o 희생자 및 피해자의 재정의
- 5.18 성폭력 피해여성이 확인되고, 국가책임이 명확해지면, 성폭력 피해여성 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희생자로 격상돼야 함
- o 사회적 연대 방안
- 여성단체, 5.18관련단체 등과 연대
- 여야를 떠난 정략을 떠난 정치권의 대연대
- 언론의 여론 환기
- 전문가 중심 사회적 연대 기구 창설

■ 결론

- o 정치권 요구사항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정상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복수의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1명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추천해야 함
- 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최경환 의원 6월 4일 제안 및 김상희 의원 7월 12일 제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5.18 당시 성폭력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인원을 늘려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o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기간(기한)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함. 세월호 특조위 와 같은 조사활동기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 록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과 관련하여 정부에 미리 유권해석을 받 을 필요가 있음
- 진상규명 범위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법률개정으로 구체화할 수 없다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 결의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주요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음
-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소위원 회 구성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인력과 관련하여, 최경환 의원 6월 4일 제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전문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진상조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오월의 노래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u>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u>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망월동의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 있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산 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투쟁없이 어떻게 헤쳐 나가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대머리야 쪽바리야 양키놈 솟은 콧대야 물러가라 우리 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피!피!

토론

'5·18과 여성 성폭력' 세미나 토론문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발족을 앞두고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여성 인권유린의 문제를 다루는 의미있는 세미나에 패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경환 의원님께서 처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시고, 제가 소속한 전남대학교5·18연구소에서 법률안에 관한 집담회를 개최할 때 관련 행사를 주관한 담당자였기 때문에 오늘의 세미나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발족을 앞두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의 문제,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 반인권적 행위를 규명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의 의의를 살펴보고, 5·18민주화운동에서 여성 인권유린 문제가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고찰하면서 향후 진상규명의 관점과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의 의의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여야간의 합의로 38년 만에 범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을 이끌어 냄. 법률에 기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은 19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해 일 방적으로 왜곡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국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 달라는 5

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호소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역사적 진전임.

이러한 역사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폄훼가 횡행하고 진상조사 불용론이 제기되는 현실임. 따라서 이번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은 한편으로는 1980년 5월 당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은 사실 발견적(Fact Finding)조사를 통하여 1980년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러한 진실규명의 과정은 진실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국민적 공감으로 연결되어서 38년 동안 폄훼와 왜곡에 시달려온 5월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광주전남시도민들에 대한 역사적 위무의 과정이 되어야 함.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과 여성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규명과정에서 여성 인권침해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이 사실임. 여성을 상대로 한 군의무자비한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이 그러한 사실조차 말하지 못한 채 통한의 세월을 지내왔다는 사실은 성폭력 범죄가 갖는이중적 질곡의 사회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은 광주지역을 전쟁터로 간주하였음. 이러한 사실은 1995년 검찰조사 과정에 청취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으로서 일부 공수특전단 병력들은 자신들이 겪은 당시의 고립과 공포의 상황을 전쟁 그 이상의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음. 특히 1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뤄진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애절한 목소리로 시위를 선동한 여성을 언급하면서 일부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적개심을 드러냄.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의 경우 격변기에 일어나는 군인들의 '비조직적 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음. 전쟁과 혁명 등의 격변기에는 평화로운 시기, 질서가 구축된 시기보다 군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훨씬 높고, 성욕이 왕성한 20대 초반의 병사들은 전투에 대한 두려움과 병영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닥치는 대로 성폭력과 폭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김동춘, 2013)는 명백한 사실을 지금까지 애써 무시해 왔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성폭력 등 인권유린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응분의 사과와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적어도 가해자들의 진솔한 고백과 사과가 이뤄지고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고 국가폭력 생존자로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함. 향후 진상규명과정에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관한 성찰과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3. 진상규명의 방향과 관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 이전에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완전한 진상규명에는 다가갈 수 없었음. 이러한 진상규명의 한계는 향후 전개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과정또한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기 추진된 진상규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조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거 진행되었던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 ①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국회가 주도한 광주청문회는 5·18민주화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는 되었으나, 신군부 세력이 여전히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511연구위원회 등 5·18왜곡 조직의 방해로 군 작전의 전모와 자료 검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② 1995년 검찰 조사: 검찰의 특별조사를 바탕으로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 군 인들을 기소·처벌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쟁점이 되는 개별 사건의 실체적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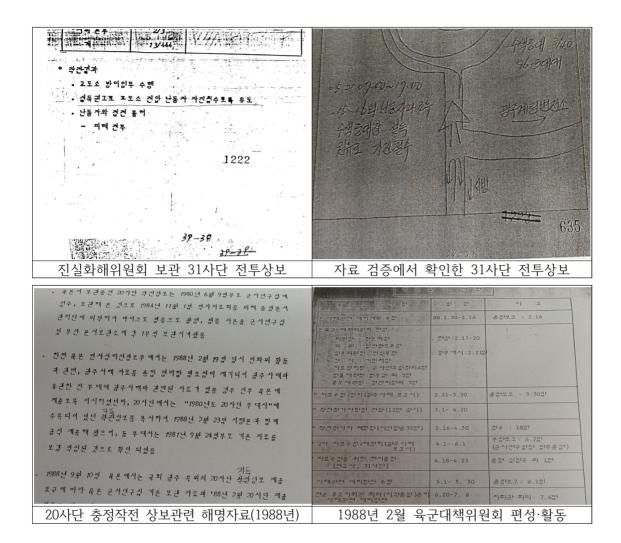
실에는 다가서지 못함. 가령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의 경우 군의 기존 주장과 달리 이미 5월 21일 새벽 실탄을 분배하였다는 사실 등을 새롭게 파악하였으나, 헬기사격의 경우에는 군인들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

③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의 사실을 새롭게 규명하고, 5·18왜곡조직의 실태를 처음 파악하였으나 조사권이 없는 관계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함.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는 '군 자료 조사'와 '관계자 조사'를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투 트랙 조사에서 군 자료 조사는 군 자료 발굴과 검증작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관계자 조사는 군 관계자와 목격자 및 피해자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면조사를 진행.

'군 자료 조사'는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조건임. 왜냐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5·18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기억을 잃어간다는 물리적 시간이 갖는 현실적 한계 때문임. 한편 군 자료는 군의입장과 시각에서 작성되거나 위·변조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뢰성이 의심되었으나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5·18왜곡조직인 511연구위원회의 내부 문서가 대거 발견되면서 '군 자료의 부메랑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게 됨.

군 자료의 부메랑 효과란 군 자료가 애초의 작성 의도와는 달리 기록에 숨겨진 이면의 진실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설사 군 자료가 위·변조되었더라도 위·변조를 통해 숨기거나 반대로 드러내고 싶었던 사실 속에서 군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음(아래 그림 1 참조). 또한 반대로 일부군 자료의 경우는 본인들의 공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상세하게 기록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군 자료의 발굴과 검증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음(아래 그림 2 참조)



군 자료는 크게 작성 부대와 생산 시기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음. 5·18민 주화운동관련 군 자료를 작성한 부대는 군 작전을 지휘했던 국방부, 계엄사령부, 육군본부, 보안사령부 등 상급부대를 비롯하여 직접 작전에 투입된 전투교육사령부, 특전사령부, 20사단, 31사단 등이며 이들 부대에서 생산한 자료는 대부분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음. 군 자료는 대부분 1980년 당시 작성되었지만 보안사령부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까지 5·18관련 군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군 자료는 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정에서 간헐적으로 공개되었으며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대부분 확인하였으나, 국방부 정책실과 합동참모본부 역사자료실은 조사기간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함. 또한 1980

년대 초반 국가안전기획부 주도로 5·18관련 군 자료가 수집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현 국정원이 관련 자료를 존안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조사하지 못했기때문에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자료조사를 진행해야 함.

'관계자 조사'는 군 자료에서 확인이 어려운 군 작전의 전개과정과 특정 사건에 연관된 부대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음.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는 군 자료에 누락된 각 부대별, 일자별 출동 및 작전 현황을 파악하여 5·18당시군 작전의 전모를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계자 조사는 필수적인 조사 과정임.

군 관계자 조사는 1995년 검찰 조사과정에서, 목격·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민간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색인조사를 통해서 기초 현황을 파악한 이후 핵심관계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사 방법이 될 수 있음.

1995년 검찰조사과정에서 확인되듯이 제대로 된 질문만이 진실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각 조사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질문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성폭력 등 여성 인권유린 사건은 군부대의 작전 또는 이동 간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군 부대별주둔지역, 이동경로,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사건 발생 장소와 가해자를 특정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시행령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무처의 조사관련 업무 분장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행할 진상규명의 범위의 특성 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재배분할 필요가 있음.

가령 성폭력 등 반인권 사건, 암매장, 행방불명자 조사는 사건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한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음. 또한 511 연구위원회와 같은 5·18왜곡조직에 관한 조사는 단지 왜곡조직의 조직경위와 활동 사항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조직이 왜곡한 5·18관련 군 기록과 내용을 파악하여 최초 발포 책임자 규명과 같은 군 작전의 전모

를 파악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함. 따라서 각 분과의 조사 내용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면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음.

- 조사 1과: 법 제3조 제2호(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제3호(511 연구위원회)
- 조사 2과: 법 제3조 제1호(반인권 사건), 제4호(암매장), 제5호(행방불명자)
- 조사 3과: 법 제3조 제6호(북한군 개입), 제7호(기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과정에서 모진 고초를 겪은 이름없는 여성들의 눈물과 노고를 기억하면서, 국가폭력 생존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과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희망함.

토 론

5·18민주화운동 · 성폭력 · 진상조사

안종철(정치학박사, 한국현대사회연구소)

1.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불의한 신군부의 독재에 맞서 저항한 의로운 민주화 투쟁이었다. 계엄군에 의해 광주 전역이 외부와 고립된 상황에서 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주먹밥을 나누고, 기꺼이 부상자들을 위한 헌 혈의 대열에 섰다. 계엄군이 물러간 이후 치안부재 상황에서도 약탈이나 매점 매석이 없었으며, 시민 스스로 질서를 지킴으로써 평화적 자치공동체를 유지했 다. 이러한 체험은 인류사에서 유례가 드문 사례로 세계의 학자들로부터 높이 평가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장이었던 로슬린 러셀 박사는 "시민 스스로 공동체 유지와 질서를 지켰던 유례없이 높은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2.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조사의 필요성

김영필교수께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자료수집, 공동조사단 결과보고서 효과적 활용 등 전반에 관해 정리를 잘 해 놓으셨다. 진상조사 이후 기해자처벌,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해 원칙적 입장에 동의한다. 특히 5·18성폭력과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대조해서 정리를 잘 하셨는데 5·18성폭력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그 본질에 있어 같으며 이것은 명백히 국가폭력이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연구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5·18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증언이 없다고알고 있는데 그동안 간헐적이지만 본인 또는 가족들의 증언이 계속 있어왔다.

예컨대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활동에 관한 증언록을 살펴보면 성폭력에 관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와 있다. 그 피해유형을 한 가지만 소개하면 당시 어린 여고생을 트럭에 싣고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저항하는 여고생에 신체상해를 가하고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눕히고 집단 윤간을 하고 버리고 가버린 것 등이다. 기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그런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이 정신병원에 있거나 또는 자살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과거 '89년 광주청문회 과정에서 여성의 성고문, 성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자료와 함께 국회에 요청하였지만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였다. 가부장제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는 늘 역사 속에서 가려져 왔다.

늦었지만 향후 진행 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5·18성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젠더 정의를 올바르게 세움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5·18민중항쟁 관련 여성피해자는 지금 현재 6차 보상까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58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여성들은 항쟁공동체를 창조적으로 조직하여 시민궐기대회를 열었고 대자보, 성명서 등을 작성하여 광주의 학살을 알려내었다. 또한 시민들의 심혼을 울렸던 새벽방송과 가두방송, 헌혈, 시체염, 검은 리본을 만들어 추모와 진실을 알리고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나누는 등 광주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을 한 여성들의 항쟁역사도 가려져 왔다.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여성성폭력' 진상을 위한 법 개정이되어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것이다. 김상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성폭력을 위한 조사 분과위원회 구성 등 성폭력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직구성 등을 담고 있다. 5·18여성 성폭력진상규명은 조사위원들이 젠더의식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광주에서 정부 공동조사단과는 별도로 5·18당사자들의 모임인 오월여성회에서는 5·18성폭력조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들 12명으로 구성된 민간조사위원들이 지난 6월 말부터 문헌조사와 피해자 상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광주민중항쟁에서 계엄군의 성폭력은 국가권력이 성차별과 성 학대를 구조적으로 생산해 낸 국가폭력이며, 5·18민중항쟁에서 고문 수사, 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및 가해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3.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조사의 방안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6개 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나

-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억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 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 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항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폭력 조사도 7항에 의해 조사가 가능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발생한 성폭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문헌조사 및 문서 검증

- 군대자료 등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자료에 대한 명확한 검증
- 기존 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증언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
- 광주광역시청 문서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보상신청서에 대한 조사
- 기존 7번에 걸친 국가기관의 조사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색
- 최근 피해자 신고센타에 신고된 피해자 신고서 조사
- 518당시 성폭력 관련 군문서 존재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증

- 2) 인물 조사(증언 청취)
- 518에 참여한 여성에 대한 전수 조사(250여명) 및 관찰인 조사
- 518에 참전한 공수부대원들의 양심선언 유도 및 증언 유도
- 전남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한 경찰, 보안사요원, 헌병 등에 대한 조사
- 3) 현장조사 및 실지조사
- 현장 및 기관 방문조사(환자 치료 병원 및 여성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 관련 단체, 트라우마 센타, 518 여성단체
- 4) 피해 여성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지정하고 시설 제공
- 반드시 여성조사관이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성관련 전문가 대동 필수
- 5) 가해자 조사
- 관련 군부대의 작전 동선 및 작전 재구성(초기 진압과정, 연행과정 추적)
- 가해 군부대 색출 (광주 외곽 봉쇄시 군부대의 만행 조사 필수)
- 고문, 수사, 수감과정의 재구성
- 6) 관련 자료
-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든 518이야기
- 여성과 민주화운동
- 여성운동 프레임과 주체의 변화
- (구술로 엮은) 광주여성의 삶과 518
- 여성, 주체, 삶: 아물지 않은 상처, 그러나 다시 새활로
- 광주민중항쟁과 여성-5월 여성연구회
- 5월 여성의 이야기들
- 민주화운동과 여성
- 광주항쟁 비망록
- 부서진 풍경
- 꽃만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
- 518관련자의 심리적 고통
- 518부상자의 트라우마

- 518민중항쟁과 여성의 삶
- 치유되지 않은 5월
- 민주장정 100년, 여성운동
-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후유증 실태조사

토 론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 사례와 사회적 배경

임태경 이사(민족문제연구소)

◈ 피해 사례

성명	신 분	피해 내용	사건발생 일시
김선옥	대 학 생	전남 도청에서 학생수습위원으로 활동. 7월 4일 계엄사령부로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다 9월 4일 석방 직전 수사관에 의해 인근 여관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함	1980. 9. 4
한기순(가)	고니아마생	계엄군에게 끌려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가정 주부가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	
0) 00	고 티 리 티 라 대 자 다 자	귀가 도중 공수 부대원들에게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며 서너명의 다른 여성들의 피해도 목격.	1980. 5. 1
오정순(가)	고니하쟁	오빠를 찾으러 나섰다가 실종 며칠 후 심한 상처를 입고 고향집 앞에 쓰러져 있었음.	1980. 5. 19
권선주(가)	고비아하쟁	오정순과 같은 학교 재학중 군복을 입은 군인에 의해 산속으로 끌려 갔다 온 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1980. 5. 19
최혜선(가)	고등	권선주가 다니던 근처 학교에 재학 중 실종	1980. 5. 19

	되었다 온 몸에 상처를 입고 길에 쓰러져 학 있다가 자취집 주인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음.	
무 명		1980년대 중반 즈음에 부상자 동지회를 찾아와 광주 MBC 건물 옆에 있는 가불탕에서	1980. 5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함.	

◈ 피해 유형 분석

5.18 계엄군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시위와는 상관없는 여학생과 가정 주부들에게까지도 무자비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은 신군부에게 광주라는 공간은 전쟁터였으며, 광주 시민은 쳐부셔야 하는 적이었고이들은 전쟁을 실행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항쟁에 참여 하였다가 구금 상태에서 군수사관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과 계엄군주둔지역에서 납치 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 사실을 고백한여성들은 현재 모두 미혼이고, 가정을 꾸리지 않은 1980년대에 피해 사실을알렸다가 지금은 과거를 부인하거나 기억에서 스스로 지워 버린 상황에 있다.

◈ 공수 부대와 계엄군 만행의 배경

12.12쿠데타 이후 우리 군 최고 지휘부는 월남전 당시 영관급 장교로서 참전의 경험을 가진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박준병등의 신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남베트남 정권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전쟁을 촉발시키고 전개했던 과정과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들을 체득해 월남전의 전쟁 시나리오를 그대로 광주로 옮겨와 실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꼭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 중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만행을 광주에서 저질렀다.

◈ 5.18 이후 성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여성들은 모든 역사적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주변인으로 취급되어 그 역할이나 피해 사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항상 뒤로 밀려나 있었다. 특히 시

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당한 성범죄 피해는 그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개별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5.18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성범죄 역시 1989년 광주청문회 전후로 밝혀질 기회가 있었으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악랄하지만 성폭행까지 당했다면 진상규명 과정에서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며 침묵을 강요하였고, 피해자는 세상으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어 또 한 번의 상처를 입었다. 이런 명분 때문에 당시에는 더 이상 밝히지 못했더라도 피해 사실에대한 기록만이라도 해 놓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현재 5.18 전체 유공자 중 여성이 5.2%인 300여명 정도이므로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성폭력 피해자를 찾아내어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고통까지도 치유될 수 있도록 더 늦기전에 국가와 시민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제 우리는 광주 민주 항쟁 중 벌어진 성폭력 범죄는 5.18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나 광주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 날 수 있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먼저형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토론

5·18 성폭력 생존자 증언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

김선미 박사(여성학자)

1. 생존자의 증언의 의미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여성인권유린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게 하는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당시의사실이 그동안의 논의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왔던 것에 답답함이 있었는데,이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하여 국가폭력에 의해 반인권적인 성적 폭력을 당한 생존자들의 '억울함'과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및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보상과 배상에 앞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사과'일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방식의 사과를 하더라도 5.18 이전의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겠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당사자들에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18 생존자들의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많이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존자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목소리들은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작은 목소리, 몸짓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눈여겨봐야 합니다. 비록 작은 몸짓과 목소리일지라도 그것은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보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신호'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5.18 당시의 성폭력 사건을 규명해내기 위

해 조각조각의 자료들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약 40여년간 끔찍하게 안고 살아온 억울함과 상처의 기억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조금이나 마 치유해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경 험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트라우마로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님을,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기억은 개인의 기억에서 역사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일어난 말하기는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새로운 말하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집합기억이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지며(심영희, 2000), 이는 당시의 참혹함과 처참함을 징벌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로 힘을 갖게 됩니다.

2. 증언하기까지의 어려움

5.18 성폭력 생존자들은 존재합니다. 이미 목소리를 내신 분들도 계시고, 단편적인 신호를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더 많은 이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집합기억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 .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과 성이데올로기의 영향
- . 현재의 가족들의 문제와 직결(50대 후반에서~70대)
- . 트라우마: 신체적, 정신적, 인간관계적
- . 정체성의 혼란과 관련하여 자신의 피해경험을 표현할 언어의 부재
- . 성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을 드러내서는 안됩니다. 약 40여년 간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경험을 드러내는 데는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한정적 기간의 신고접수가 아닌 상설 신고접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3. 생존자들에 대한 지지 및 연대 필요

다른 국가폭력과 마찬가지로 5.18 성폭력 생존자들의 문제는, 개인의 말할 용기와 결단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이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두 번 다시 5.18 당시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우리사회의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환경 만들기도 필요합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를 가시화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해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중요한사례가 될 수 있다.

5.18 생존자들의 용기와 결단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 가해자 증언 필요 (가해병사의 증언): 5.18 당시 가해자 혹은 가해의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의 양심있는 목소리가 필요.
- . 전문가 증언(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의 자료 등) 및 연구: 5.18 성폭력 피해를 규명해내기 위해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당시 군의 자료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 필요.
- . 지지세력 필요(정신대대책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운동):
- .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대
- . 미디의 역할
- . 여성주의 담론 형성
- . 정부차원의 지원체계(93년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지원 제정): 생존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필요
- .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 단기간의 피해자 신고 접수가 아닌 상시접 수일 것
- . 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4. 앞으로의 방향 및 과제

- . 국가에 의한 진정한 사과
- . 피해에 따른 보상과 배상
- . 국가 폭력의 책임자 처벌
- . 국가 폭력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 재방 방지 및 대책 마련

토론

고문 및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가혹행위 조사와 2차 피해 방지

장세레나 상임대표(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80년 5월 여성의 활동에 대한 정리 필요

80년 오월 당시 여성들은 민중항쟁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주체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활동은 주먹밥으로만 부각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역사에서 그랬듯이 늘 여성들의 활동은 축소되거나 지워지고 일상에서의 여성의 경험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치부되어온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두방송에 나섰던 여성들, 투사회보를 만들어 돌렸던 수많은 여성들, 민원실에서 차량통행증과 유류보급증 및 출입증, 야간통행증 등을 발급하는 민원을 담당했던 여성, 도청에서 취사를 담당했던 여성들, 헌혈 및 간호뿐만 아니라 입관을 하고 부족한 관을 직접 구하러 다녔던 여성들, 마스크를 만들고 검은리본을 만들고, 광주의 고통과 눈물을 외부에 알리다 모진 고초를 당했던 이름없는 여성들의 눈물과 노고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80년 5월 당시 여성들에게 저질러졌던 학살과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과 더불어 오월여성시민군으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정리하고 알려야 하는 후대로서의 책무를 느낍니다.

■ 성폭력을 포함한 고문 등 여성에 대한 가혹행위조사를 해야 함

불의에 항거하며 정의를 세우고자 항쟁에 참여했다는 80년 오월여성의 목소리가 38년이 지난 오늘은 미투·위드유 운동으로,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80년 5월에 자행된 고문수사와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는 차명숙 선생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0년 당시 고문수사를 비롯한 가혹행위와 계엄군, 수사관에 의한 성폭력, 성고문에 대한 인터뷰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80년 5월 당시의 피해에대해 많은 증언과 연구가 있었지만 고문피해와 성피해에 대해서는 연구논문조차 손으로 꼽거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고 드러내기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은 5·18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여성들의 경험은 당시의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피해규모까지도 상당부분 가려지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성이 피해를 밝히는데 가족들의 반대부터 부딪쳐야 했던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밝히는 것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상처였습니다. 이렇듯 80년 광주를 살아온 여성들은 피해자의 입을 막는 가정과 사회의 억압 속에서 이중 삼중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와 후유증을 감당해 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8년 만에 당시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이제부터라도 역사적 진실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기록을 해야 합니다. '5·18기념재단'이 5·18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기록한 구술자료집에 실려있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을 비롯해 80년 5월 당시 여성들에게 저질러졌던 학살과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 여성계는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와 2차 피해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제기하였습니다. 특별법이나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어렵다고 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칙'에 <u>5·18민주화운동 관련 여성에 대한 가혹행위 및 2차 피해조사</u>라고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본법에도 명시된다면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가혹행위로 해야할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은 성폭력으로 해석되나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하는 것도 한 이유이고, 성폭력으로만 접근했을 때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몸에 새겨진 외상기억이나 고통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나 상처는 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 당시 군인들이 광주 여성들에게 저질 렀던 학살과 폭력행위는 전쟁에서 적국의 여성들에게 자행되는 반인륜적 전쟁 범죄와 너무나 닮아있으며 이것은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한계를 두지 않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가해자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진상규명 과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2차 피해방지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2차 피해 방지라 할 수 있습니다. 4월 30일 고문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신 생존자가 이후 안전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80년 당시 고초를 겪었던 또다른 생존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2차 피해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18민중항쟁은 아픈 한국근현대사 중의 하나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생애사적 측면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수조사'와 같은 방식의 조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피해에 대한 접근은 2차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정리하며

5·18민중항쟁이 38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광주는 싸우고 있습니다.

시민군들이 목숨으로 지켰던 5·18 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요구하며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2018년 9월 28일 기준 752일째) 농성을 하고 있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0년 항쟁 당시에도, 그 이후 진상규명 싸움과정에서도, 그리고 현재 복원싸움의 한 가운데에도 여성이 있습니다. 오월여성생존자들과 유족들이 이야기하시던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광주의 후예로서, 당당한 여성후배들로서 함께 할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참고자료: 차명숙 기자회견문>

80년 5월에 자행된 고문수사와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

저는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의 무자비한 만행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리기위해 가두방송을 시작했으며, 21일 도청 앞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 병원에서 부상자를 돌보다가 기관원들에게 붙잡혀 505 보안대 지하로 끌려갔습니다. 아직도 언제 붙잡혔는지(23일로 추정), 어느 병원(기독병원으로 추정)에서 붙잡혔는지 정확한 기억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보안대 지하로 내려가는 수많은 계단만이 희미하게 생각납니다. 저는 보안대와 상무대 영창에서 수사를받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군 계엄 하에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광주시민들에게 가해진 고문은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했으며, 여성들도 예외가아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해진 고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과 조금의인권도 보호되지 못했으며, 그 속에서 여성들은 끌려 온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여성들의 고문 받는 소리,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끊임없이 폭언과 가혹한 폭행이 가해졌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고 군화발로 밟아서 돌려도 신음소리 한 번내지 못했고, 어린 여학생들을 상무대 책상위에 앉혀 놓고 물을 끼얹어 가면서어깨가 빠지도록 몽둥이로 등을 두들겨 팼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투옥되었던 광산경찰서에 돌아왔을 때 (고)조아라 YWCA 회장님과 (고)이애신 YWCA 총무님 등 어른들이 애들 죽는다고 병원에 옮겨달라고 요구해서 모두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저 또한 보안대와 상무대 영창에서 받은 고문으로 인해 하얀 속옷이 까만 잉크색으로 변하도록 살이 터져 피가 흘러 나와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참한 모습으로 엎드려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980년 9월 16일 광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지내던 중, 80년 9월 어느날(21일 또는 22일로 추정) 오후 5시경 교도관 세 명이 들어와 영문도 모르는 나를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곤봉을 끼어 양쪽에서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미 한차례 고문을 받고 난 뒤였기 때문에 2차 고문은 더더욱 두려웠고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정해진 7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죄목이 추가되면 사형이나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신들이 하라는 대로시인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광주교도소에서 일주일동안 끔직한 고문수사를 받은 후, 자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80년 10월 2일(금치 30일)

부터 10월 31일까지 혁시갑을 한 채 징벌방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30일 동안 징벌방에서 폭 10cm, 두께 3cm의 혁띠를 차고 25cm 쇠줄에 묶여있는 가죽수갑을 양쪽 손목에 찬 채 먹고 자고 볼일까지 보면서 짐승만도 못한 상태로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2011년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 수감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다시 잡혀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알았는데도 제 기억에서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감기록에는 1980년 9월 21일 20:00경 광주교도소 여사1호실에서 불온언사를 발언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참조)

38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80년 5월의 기억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잔인한 고문수사의 기억이 여전히 제 몸에서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고문을 받았던 광주시민들 모두가 겪는 고통일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수감기록으로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 광주교도소에서의 고문수사와 잔혹 행위를 고발함으로써 5월 광주민중항쟁의 진실 찾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1. 5·18 진상조사위는 80년 5월에 자행된 고문수사와 잔혹행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 2. 광주교도소는 지금이라도 80년 자행한 고문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라.
- 3. 5·18 광주민중항쟁을 연구하는 단체 및 연구자들은 역사적 진실을 후대에 게 물려주기 위해 진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라.
- 4.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관련단체들은 아직도 80년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국땅에서 외롭게 사는 여성처럼 숨어있는 여성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소중한 증언을 듣고 역사적 진실로 기록하라.

2018년 4월 30일 차 명 숙

5·18 성폭력은 국가폭력이다. 5·18진상규명 어떻게 해야 하나?

이윤정(정치학박사,오월민주여성회장)

1. 5·18민주화운동에서 여성의 역할과 역사적 의의

5·18민주화운동은 분단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외세의 묵인 하에 하나회를 중 심으로 한 신군부 정치군인들이 정권장악을 위해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에게 학살을 자행한 불의에 맞서서 저항한 의로운 민중항쟁이었다. 계엄군에 의해 광주 전역이 고립된 상황에서 '70년대 반독재 운동을 했던 여성들과 광주의 이름 없는 어머니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피와 밥을 나누는 치열한 활동을 전 개하였다. 여성들은 계엄군의 무자비한 살상에 맞서기 위해 흩어진 학생들과 시민들을 모아 시민직접참여의 창조적 항쟁공동체(공간:YWCA거점)를 구성하 였다. 모든 언로가 막혀버린 고립무원의 광주에서 시민궐기대회를 열어 시민들 의 총의를 모아내고 가두방송, 각종성명서, 대자보등을 작성하여 광주의 학살 을 알려 냈다. 또한 무자비한 학살의 공포 속에서도 여성들은 쌀을 모으고 거 리에서 솥을 걸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들을 보살피고 피가 부족한 상황에 서 헌혈에 앞장서며, 시체염은 물론 분향소를 지키며 수 만개의 검은 리본을 만들어 희생자들의 추모와 신군부의 왜곡된 진실을 알려냈다. 이렇듯 광주여성 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기반납을 반대하 며 정의를 위해 사수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신군부의 최후통첩을 선포한 마 지막 순간에도 여성들은 흔들림 없이 '광주시민이 옳았다는 것을 죽음으로서

역사에 남길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는 윤상원 열사의 대변인 최후 브리 핑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렇듯 죽음으로서 대항했던 여성들의 저항은 광주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역사의 정의와 평화를 향한 우주적 절규였다. 광주민중 항쟁은 실패로 끝났지만 38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승리한 항쟁, 5·18민주화운 동으로 부활하였다. 그 힘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직접참여의 창조적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높은 도덕적 시민성, 죽음을 넘어선 사수투쟁에 있었다고 본 다. 그 한 중심에 여성들의 활동이 있었다.

2. 5·18성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조사의 필요성 및 방안

발제자께서 5.18성폭력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관, 성과를 내기위한 전략,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잘정리해 놓았으며 동의한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5·18 성폭력조사에 대하여 개정안별로 비교 할 수 있어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김교수께서 5·18성폭력과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비교하여 국가책임이라고 규명함으로써 5·18성폭력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그 본질이 맞닿아 있음을 제시해 주었다. 현재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여성 관련자는 6차 보상까지 295명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로 확정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지난 시기 5·18광주항쟁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남성중심적가부장제 사회구조 속에서 가려져 온 것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문제 또한 광주청문회에서도 자료와 함께 제기하였지만 쟁점화 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증언록 및 기타 자료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이나와 있다. 예컨대 무고한 여성들이 계엄군에 의해 집단으로 끌려가 신체상해와 성폭력을 입은 사실이 확실한 개연성이 있는 명백한 경우도 탈락이 되었고 더욱이 5·18관련단체에서 조차 도외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5·18성폭력 피해유형을 보면 대체적으로 1980년 5월 19일, 20일 초기 진압시기에 여고생들이 많으며 장소는 야산으로 끌고 가서 신체상해를 가하고 강간 또는 집단윤간을 하였다. 또한 5월21일 집단발포로 희생된 사망자들의 검시조서를 보면 총상의 부위가 남성들은 두상 또는 흉상인 반면 여성들은 하복부를 겨냥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5·18민주화운동은 전쟁에서 적군에게 저지르는 것과 같은 성폭력, 성폭행 등 국가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현재 남·북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젠더정의를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본질적인 문제이다. 젠더정의가 사회 총체적 문제에 관통되면 새로운 차원의 사회구성체로서 중추적 사회원리가 될 것이다. 젠더 정의를 올바르게 세움으로써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 미래사회 지속가능한 보편적 가치로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에서 계엄군의 성폭력은 국가권력이 성차별과 성 학대를 구조적으로 생산해 낸 국가폭력이며, 5·18민중항쟁에서 고문 수사, 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및 가해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히처벌해야 한다

향후 진행 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5·18민 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진상규명의 범위에 '여성성폭력'조사부분이 빠져 있음으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5·18성폭력 전담 소위원회와 특별히 조련된 성폭력 전문조사원이배치되어야 한다.

3.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범죄 조사의 기본 방향과 원칙

- 현재 이미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된 사건과 사례를 특정하고, 사건과 사례에 대한 전 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당시 자행된 성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증명해 낸다.

가해자를 색출하기 위해 당시 군 상황일지, 작전일지, 전투상보, 교훈집, 미국 백안관에 수시 보고한 비밀문서 등을 입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부대배치도, 날짜별, 시간대별 군대이동경로를 밝혀 가해자를 찾아내야 한다.

- 5·18광주항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전수조사를 통한 부대별 인명록 구축
- 피해자들의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성폭력 피해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 방송, 라디오 등 지속적인 홍보필요, 피해자 보호
- 성폭력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는 관련 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속지원이 필요하며 5·18민 주화운동 당시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지식을 가진 별도의 팀의 조력이 필요하며, 광주 현지의 여성단체와 5·18단체가 협력하여 그동안 증언과 제보 등

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 조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여성가족부와 인권위 지속적인 연대 필요

4. 조사대상 및 사례

1) 가해 유형에 대한 조사 대상

- 초기 진압과정에서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의 훼손 등의 만행
- 불법 구금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행위(전남대, 조선대 포함)
- 연행과정에서 성폭력(집단 폭행 등)
- 광주 외곽지역에서의 성폭행 등

2) 피해 사례의 특정을 위한 사전 조사 대상

- 피해의 사례 수집을 통한 유형 분류
- 5.18희생자들의 검시조서 및 검시관들에 대한 조사(손옥례, 박현숙 등)
-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 전남 여성 정신질환자와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
- 1998년 ~ 2000년 당시 5.18기념재단의 현장조사 및 증언채록 내용 중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의 관련 자료
- 1980년 당시 광주시와 전남도의 피해신고 내용 등

5. 조사방법

1) 문헌 및 문서 검증

- -상황일지, 작전일지, 전투상보, 교훈집, 한·미 연합사령부 미해제 비밀문서 등 군대자료 입체적 검증을 통한 증명
-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 -전남대 5·18연구소, 5·18기념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연구소 등에서 채록한 증언집 분석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보상 신청서

3) 증언 청취

- 5·18에 참여한 여성 중 성폭력 관련 징후가 있는 대상 및 성폭력 피해자
- 새로 신고한 피해자
- 5·18피해보상에서 탈락한 성폭력 피해자

- 가해부대 전수조사 및 자발적 증언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 유도
- 5·18광주항쟁에 증파된 공수부대원들의 전수조사 및 양심선언 유도 및 증언 유도
- 전남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한 경찰, 보안사요원, 헌병 등에 대한 조사
- 4) 피해자 증언(2차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정예화된 성폭력 상담 조력자 및 젠더감수성이 높은 여성조사관)

5) 가해자 조사

- 19일, 20일 초기진압과정에서 학동, 화순 및 백운동 방향 군부대 추적 및 가해자 발본색원
- 가해 군부대 색출 (광주 외곽 봉쇄 시 군부대의 만행 조사 필수)
- 가해자 색출: 여성에 대한 성고문, 가혹수사 진상조사 (계엄사 상무대 영창 및 광주교도소)

6. 민간단체의 역할

○ 국제법과 유엔인권위원회와 연계한 국가폭력의 진실규명과 가해자들의 처 벌을 위한 노력

- 5·18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사면 등에 의해 국내법상으로 5·18 당시의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국제법을 통한 처벌의 원칙을 관철시켜갈 수 있도록 노력
- 정부기관에 의한 조사의 한계를 예측하며 실효적인 조사를 통해 5·18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 주요 대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선행조사와 연구 등의 활동 필요
- 이미 확인된 대표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의 가능성 등에 관한 연구와 국민공감대 형성에 주력

7) 관련 자료 목록

- 5월여성 아카이브구축 목록집(여성단체 연합)
- '5·18성폭행/ 성고문'관련기사(성폭행 설 보도: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 13권)
- 5·18 여성 구술 목록(5·18기념재단)

- 중앙일보, 5·18성폭행 피해자 아지도 고통(1995.12.20.)
- -동아일보, "공수대원에 성폭행 당해"(1996.01.09.)
- -한겨레, 광주성폭행 또 밝혀져 5·18 현지조사(1996.01.15)
-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11권 308쪽(광주 민주화운동 가두방송 두 여인)
-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3권 353쪽(부상자현황)
-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11권 308쪽(간첩누명)
-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14권 159쪽(광주 여성들, 이렇게 싸웠다)
- -사망자 검시조서
-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든 5·18이야기
- 여성과 민주화운동
- (구술로 엮은) 광주여성의 삶과 518
- 여성, 주체, 삶: 아물지 않은 상처, 그러나 다시 새활로
- 광주민중항쟁과 여성-5월 여성연구회
- 5월 여성의 이야기들
- 민주화운동과 여성
- 광주항쟁 비망록
- 부서진 풍경
- 꽃만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
- 5·18관련자의 심리적 고통
- 5·18부상자의 트라우마
- 5·18민중항쟁과 여성의 삶
- 치유되지 않은 5월
- 민주장정 100년, 여성운동
-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후유증 실태조사